

제조물책임법 1)

제조물책임법 일반

글·강창경 연구의원
한국소비자보호원

기업 책임의 발전

매수인 책임 원칙 → 매도인 책임 원칙 → 제조자 책임 원칙

1) 매수인 책임원칙

산업화 이전에는 고객의 주문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경우에는 주문자인 고객이 요구하는 대로 제품을 제조하였기 때문에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결함이 있더라도 고객이 책임을 지게 된다. 또한 주문 생산이 아니라도 제품 자체가 단순한 성질과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고객이 개별 제품의 성질이나 기능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고객에게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않는 잘못을 물었는데, 이를 이른바 '매수인 책임주의' 라고 한다. 영미법에서 말하는 '구매자로 하여금 주의하게 한다'는 원칙이 이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A가 B에게 소를 팔았다고 하자. B는 자신의 외양간에 소를 데려다 놓은 후, 사료를 주고 잘 돌보아 주었으나 병색이 짙어지고 급기야는 죽어 버렸다. 이 경우 B는 A에게 병든 소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돈을 돌려 달라고 할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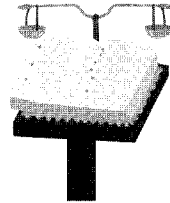
있는가? '매수인 책임 원칙'에 따르면 B가 소를 살 때 병든 소인지 아닌지를 제대로 확인하여 사야 하고, B가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으므로 A는 책임이 없는 것이다.

2) 매도인 책임원칙

산업이 발달하여 대량 생산체제가 성립되고, 제조자가 한꺼번에 많은 제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제조자는 대량으로 제품을 만들어 시장에 유통시키고, 소비자는 시장에서 유통되는 제품을 구입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이 때 소비자는 다른 사람도 사용하고 있고,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제품을 구입하게 된다. 그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하자는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는 제품을 제조함에 있어서 행정상 제제도 가해지고 기업의 자발적인 품질관리도 있으므로 소비자는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 시대에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 매도인인 제조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또한 제조자가 아닌 유통업자가 제품을 파는 경우에도 매도인인 유통업자가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런 사고를 바탕으로 매도인이 제품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이른바 '매도인 책임 원칙' 이 나왔다.

3) 제조자 책임 원칙

산업의 발달과 분화는 소비자 피해의 구제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제품의 생산은 제조자, 판매는 유통업자(매도인), 소비는 소비자(매수인)라는 거래 형태가 나타났고, 이로써 단순한 제품 판매자인 매도인에게 결합 제품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오늘날의 거래 실정에 맞지 않게 되었다.

현대 산업 사회에서는 소비 생활의 안전을 매도인의 판매행위나 소비자 자신의 판단에도 의존하지만, 제품을 설계·제조하는 제조자 등에게 의존하는 일이 많아지게 되었다. 실제로 결합 제품이 시장에 유통되는 경우, 위험을 예견하여 회피할 준비가 되지 않은 소비자는 종종 생명이나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입고 있다.

이에 제조자와 소비자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인식하고, 또한 결합 제품에 기인한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더라도 결합 제품으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조자가 직접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제조물책임 정신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예를 들면, A(소비자)가 B(식품 가게 주인)로부터 우유 한병을 사서 먹은 후, 복통을 일으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고 생각하자. 이 경우 A는 병원비와 위자료 등을 B에게 청구하는데, 이는 매도인인 B가 우유의 하자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적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B의 입장은 어떠한가, B는 C(우유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우유를 병당 30원의 이

윤을 남기고 팔고 있는 사실에서, B는 C의 단순한 판매대행자에 불과하다는 사실 판단이 나온다. 또한 B는 C가 제공하는 우유에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알 수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매도인이라는 입장에 있다고 하여, A가 청구하는 금액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합리적 타당성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즉, A가 C에게 비록 계약 관계는 없지만,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 것이 바로 제조자책임이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고도 산업사회에 이른 오늘의 경제실정에서 결합제품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손쉽게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생각은 이미 정착되어 있다. 소비자는 제품의 성분, 성능, 제조 공정 및 사용 방법 등에 관한 모든 정보를 스스로 알 수 없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으로 해결하려고 하여도 소송 수행 및 사실 입증 등에 어려움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각국에서는 제조물책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권리 구제에 유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각국의 입법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법제의 국제적 통일 운동의 결과이기도 하다.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에서는 1973년 제조물책임에 적용할 법률에 관한 조약안을 채택하였고, 유럽에서는 여러 차례의 초안 심의를 거쳐 1985년 7월에 '제조물책임에 관한 EC지침'을 채택하였다. 이 지침은 오늘날 많은 국가의 입법 지침이 되었고, 대다수의 유럽 국가는 이를 받아들이고 있다.